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104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9.10.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3.04.]

[맛소우서울칼국수]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삼원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삼원에프앤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135번길 129-19(성석동)

[대표전화번호 : 02-712-8007] [대표팩스번호 : 02-712-8009] [담당부서 : 운영팀 02-712-8007]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 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 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 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추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맛소우서울칼국수 외 6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학	현로	135번길 12	29-19(성석동)
(주)삼원에프							
– –	법인 설립등기일 2019.09.23 법인등록번호 110111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앤비			2019.09.30	원지환	02-712-8007 02-712-8		02-712-8009
			1-7239505	사업자등록반	호	866-8	37-0133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3	고양시 일산동구 성	현로 135번길	
사용인	원지환	이지하 맛소우서울칼국수 외		129-19(성석동)		
(임원)	면서면	6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원지환	02-712-8007	02-712-800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3	고양시 일산동구 성	현로 135번길	
사용인	이지애 맛소우서울칼국수 외			129-19(성석동	-)	
(임원)		6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원지환	02-712-8007	02-712-8009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 '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이밥스	맛소우서울 칼국수 외 7개	2020.07.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19-6	김동환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화덕애쪽 신림직영점	화덕애쪽	2023.12.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54, 1층 102호(신림동)	김성순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맛소우서울칼국수]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맛소우 서울칼국수	한식칼국수전문점	
상 호	맛소우 서울칼국수 00점		
상표(서비스표)	公 公 公 公 公 公 公 公 公 公	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19-0065368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 총 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3년	219,922	525,628	-305,705	1,179,832	-499,904	-324,732
2022년	702,917	683,891	19,026	872,393	-34,895	12,324
2021년	662,519	655,817	6,702	1,075,326	15,991	12,586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ગગતામ	A) =	-1 7101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원지환	대표이사	2019.09.23~현재	(주)삼원에프앤비 대표이사	사업 총 괄
관련 임원	이지애	감사	2019.09.23~현재	(주)삼원에프앤비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7174	임원-	수(명)	지이스(대)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2	_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사업 경영	2020.07.21.~현재	솔청면옥(등록번호: 2008010073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7.21.~현재	토부가(등록번호: 20080100735)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7.21.~현재	궁채(등록번호: 20080100734)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삼원에 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0.07.21.~현재	진시앙(등록번호: 20120100498)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7.21.~현재	봄채향(등록번호: 20120100499)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7.~2023.04. *정보공개서 자진등록취소	리또르(등록번호: 20150187)이라는 영업표지의 양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7.21.~현재	맛소우(등록번호: 20150186)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7.21.~현재	맛소우서울칼국수(등록번호:				

		20191045)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20.11.~2023.04	분식창고(등록번호: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20210378)이라는
	자진등록취소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2023.12~2024.04.	화덕애쪽(등록번호: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20231764)이라는
	자진등록취소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934) H含254	계약내용에 따라 상표사용	2019.04.26. 출원 2020.07.02. 등록	출원 제4020190065368호 등록 제4016214620000호	주식회사 삼원에프앤비	2030.07.0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Π. 가맹본부의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사업 현황

1. (맛소우서울칼국수)를 시작한 날: 2018년 12월 13일

2. (맛소우서울칼국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이밥스	맛소우서울 라고 ^	김동환	2018.12.13. ~ 2020.07.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u>칼국수</u> 맛소우서울			135번길 129-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삼원에프앤비	조구 기원 칼국수	원지환	2020.07.21.~현재	135번길 129-19(성석동)

3. (맛소우서울칼국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맛소우서울칼국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칼국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101	2021.12.31.		2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	1	1	_	1	1	_
서울	-	_	-	-	_	_	-	_	_
부산	1	1	_	1	1	_	1	1	_
대구	-	1	-	-	_	_	-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	_	_	_	_	_	_	_	_
대전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	1	-	-	_	_	-	_	_
경기	ı	_	_	_	_	_	_	_	_
강원	-	-	-	-	_	_	-	_	_
충북	-	_	-	-	_	_	-	_	_
충남	-	_	-	-	_	_	-	_	_
전북	ı	-	-	-	_	_	-	_	_
전남	_	-	-	-	_	_		_	_
경북	_	_	-		_	_		_	_
경남	_	_	-	-	_	_	-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1	_	_	-	_	1
2022	1	_	_	-	_	1
2021	5	_	4	_	-	1

6. [맛소우서울칼국수]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맛소우서울칼국수]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٦Η	자동 /이르	어어교기	정보공개서	어 조	가맹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솔청면옥	20080100733	한식	1/0	0/0	0/0	
		봄채향	20120100499	한식	3/0	3/0	3/0	
		토부가	20080100735	한식	1/0	1/0	1/0	
	(주)삼원에 프앤비	진시앙	20120100498	중식	3/0	2/0	2/0	
가맹본부		리또르	20150187 *자진등록취소	양식	0/0	0/0	0/0	
		궁채	20080100734	한식	20/0	20/0	19/0	
		맛소우	20150186	일식	2/0	2/0	2/0	
		분식창고	20210378 *자진등록취소	분식	2/1	0/0	0/0	
		화덕애쪽	20231764 *자진등록취소	한식	0/0	0/1	1/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 준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 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대	배출액 비고
---------------------------------	--------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포 매출액(평균 범(하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	134,914	5,250					
서울	-	해당없음	-	-	-	-	-	
부산	1	해당없음	-	_	-	_	_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_	_	-	_	-	
인천	_	해당없음	_	-	-	_	_	
광주	_	해당없음	_	ı	_	_	_	
대전		해당없음	_	_	_	_	_	
울산	_	해당없음	_	-	_	_	_	
세종	_	해당없음	_	_	_	_	_	
경기	-	해당없음	_	_	-	_	_	
강원	-	해당없음	_	_	-	_	_	
충북	-	해당없음	_	_	-	_	-	
충남	-	해당없음	_	_	-	_	_	
전북	-	해당없음	_	_	-	_	_	
전남	-	해당없음	_	_	-	_	_	
경북	-	해당없음	_	_	-	_	-	
경남	-	해당없음	_	_	-	_	-	
제주	_	해당없음	_	-	_	_	_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 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	174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맛소우서울칼국수외 6개 브랜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아래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단, 광고비는 브랜드 전체에 대한 통합 광고비 성격으로 브랜드별 분류가 불가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	용(단위: 천원 미포함)	비고	
, _	, _	L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
합계	37 1도 ************************************	(비공개)	3,143	デー (비공)		
	소계		3,143	(日子)	-	
	्राष्ट्र (धारुगा				-	
광고	्राष्ट्र (धास्त्रम्				-	
	्राष्ट्र (धास्त्रम्				-	
	्राः (धास्या				_	
판촉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고	1 1 Q	нГэ
	양국	기가 하고 기구기가	비ᅶ
	보험 상품명	프랜자이즈 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삼원에프앤비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 험기간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 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1개월 소요

귀하는 가맹계약체결일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나 당사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함으로써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귀하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보험증권을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가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보험효력은 위 표의 보험기간과 동일하므로 동 기간까지 보험증권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당사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외장공사, 전기증설, 냉난방기설치, 철거, 닥트, 상하수도 인입, 정화조, 가스설치, 소방실비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보증보험대체)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보증보험대체)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A타입 : 로드샵/전문식당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해지	가맹본부의 귀 책사유가 아닌 경우	
교육비	5,500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교육 시작 1일 이전 에 계약 해지	제조기술, 노하 우 전수 개시 및 완료	교육개시 후 반 환불가

※B타입: 푸드코트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다음	가맹본부의 귀책	가맹본부의 귀	

		날까지 가맹본 부가	사유로 인하여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해지		아닌		
교육비	5,500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교육 시작 1일 이전 에 계약 해지	제조기술, 우 전수 및 완료	노하 개시	교육개시 환불가	후 빈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보증금 없음	3,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로드샵/전문식당가)	금액(푸드코트)
합계	14,000	14,000
가입비	5,500	5,500
교육비	5,500	5,500
(현금)보증금	3,000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1				
구분	지급대상	금액 (A타임)	금액 (B타임)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91,400]	[31,900]	3,828			로드샾, 샾인샾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i>협력</i> <i>업체</i>	121,000	푸드코트 기준에 따름	2,420	설치 1일 이전		목공, 도장 등 내장공사
간판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협력 업체	4,400	1,100	88	설치 1일 이전		전면, 돌출 등
주방기기/ 잡기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i>협력</i> <i>업체</i>	44,000	27,500	880	물품 공급 1일 이전		냉동냉장고,렌지, 싱크대,식기,기구 등
가구	협력업체	11,000	푸드코드 기준에 따름	220	물품 공급 1일 이전		테이블, 로스타
기타	가맹본부	5,500	프드코트 기준에 따름	110	물품공급 1일 이전		POS, 인쇄물, 유니폼, 비품 등
초도물품	가맹본부	5,500	3,300	110	물품공급 1일 이전		원재료

- [위 표의 금액(A타입)은 165㎡(50평)기준이며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단 금액(B타입)은 푸드코트 입점특성상 인테리어, 가구, 기타비용은 제외된 금액이며 입점 푸드코트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 별도비용: 외장공사, 철거, 전기증설, 냉난방시설, 닥트, 상하수도 인입, 정화조, 가스설치, 소방설비, 인허가 등 항목은 일괄적용이 어려운 부분으로써 점포시설 시 해당 비용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 ※ 인테리어 공사를 귀하가 직저 시공할 경우 본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일정금액의 감리비(공사총액의 10%)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는 귀하와 합의하여 가맹점 입지를 선정하되, 입지의 선정은 통행인의수, 교통량, 시장특성, 통행인의 구매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분납받지 아니하고 일시불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귀하가 납부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납부시기를 귀하와 합의하여 일정을 조정 후 가맹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주)삼원에프 앤비	월 매출액의 2.2%	매월 말일	잔여기간	계약기간 만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주)삼원에프 앤비	협의후 분담	협의 결정	광고의 미시행	광고시행	
판촉분담금	(주)삼원에프 앤비	합의후 분담	협의 결정	판촉의 미시행	판촉시행	가맹점사업자 개별판촉가능
교육훈련비	(주)삼원에프 앤비	산정후 통보	교육 실시전 별도통보	교육의 미실시	교육시행	정기교육 비정기교육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해당업체	산정후 통보	간판 변경 완료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해당없음				가맹점사업자 자율선택
점포환경개선 비용	해당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완료시			55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가맹정사업자 자율선택
지연이자 [®]	(주)삼원에프 앤비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본부에 대한 일체의 채무금액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해당사항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 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경영상태관리	위생, 설비, 원재료, 운영메뉴 관리상태 점검	수시	문의: 운영팀
매출/회계처리	매출현황 및 회계처리 관리상태 점검	수시	문의: 운영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

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 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맛소우서울칼국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삼원에프앤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귀하에게 남은 가맹 계약기간 대신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계약으로 하고 가입비 등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귀하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가맹계약서 제11조 제2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전산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즉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 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귀하는 위 가)의 상호 등의 사용중단,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 다) 위 가)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라) 귀하는 당사와 당사의 거래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일 이전에 당사와 당사의 거래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귀하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완제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리 20%의 연체이자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기간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의무불이행의 결과로 당사에 발생하거나 당사가 입게되는 모든 손해, 손실, 비용(손해배상,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등을 포함합니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종료 또는 해지시 이후에 가맹계약서 조항의 일부 규정을 위반한 귀하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 및 이행을 위한 금지명령을 구하는데 있어서 당사에 발생된 모든 변호사 보수, 기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맛소우서울칼국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 없음(당사는 전년도 물품공급을 하지 않아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맛소우서울칼국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4]참조	가맹계약서 제24조, 제25조 참고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5] 참조	[별첨 5] 참조	해당공문 등기발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화 어조 베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칼국수, 만두 등의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맛소우서울칼국수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당 1점포(동, 면, 리 기준)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맛소우 서울 칼국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다른 유통채널 등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 단일 영업지역 푸드코트의 경우 푸트코드의 특성상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가 2개 이상 입점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당사는 각각의 가맹점사업자 전체적인 합의를 통하여 운영메뉴를 중복되지 않게 분배하여 가맹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 제6조 제1항
○ [맛소우 서울 칼국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당사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 하거나, 가맹점을 이전	언
한 경우	
○ 귀하가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상품자재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귀하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귀하가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 귀하의 채무액이 계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 제1항
○ 귀하가 당사와 합의 없이 점포 운영을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세27조 제1항
○ 귀하가 당사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귀하가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상품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노후된 점포설비의 교체, 보수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 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생계약서
0	가맹점사업자가 <u>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u> <u>다)</u>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3	조 제2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 리기 어려운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	
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	제4조 제4항
동되는 경우	\ \d_\tau_\\\\d_\tau_\\\\\\\\\\\\\\\\\\\\\\\\\\\\\\\\\\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 적격성 기준 및 가맹점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 준용	교육비 발생
대리행사	불가능	-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맛소우서울칼국수]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당사의 제조기법이나 식자재, 원·부자재를 사용한 레시피를 원 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 식의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운영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맛소우서울칼국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매장상황에 따라 변경	주 5일 이상(월 25일 이상) 연속하여 2일 이상 휴업 금지	문의: 운영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없음	대체근무 가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및 친인척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준비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개월	운영팀	
매장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개월	운영팀	
서비스	담당자 매장 방문 → 준수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개월	운영팀	
위생,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준수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개월	운영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별첨4]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삼원에프앤비와 귀하가 각 1부 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맛소우서울칼국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8	광고	부딛	t비율	보다 저기	ען די	
구분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광 고 상품광고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TV,라디오,신문, 인터넷 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100%	-	/ 6명구합 및 세시(6세시)		
판촉	전국규모	50%	판촉비		지역단위판촉,	

전체행사	지역규모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 판총비 50% 중 해당지역가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전국단위판촉
		50%	맹점사업자 총매출액 비율	최종분담금 확정	
	가맹사업 자 자신의 지역내	-	100%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합의를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활동 등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전단지, 스티커, 카다로그, 쿠폰, 판촉물 등의 제작은 [맛소우서울칼국수]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통제 하에 시행할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 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계약서 제8조 제5항에 의거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기간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의무불이행의 결과로 당사에 발생하거나 당사가 입게되는 모든 손해, 손실, 비용(손해배상,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등을 포함합니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종료 또는 해지시 이후에 가맹계약서 조항의 일부 규정을 위반한 귀하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 및 이행을 위한 금지명령을 구하는데 있어서 당사에 발생된 모든 변호사 보수, 기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당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1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 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가맹금 예치	-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D-27(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6 ~ 24(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3(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2 ~ 5(18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차 이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뷔)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이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안정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방(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라어 공사비용 (장바잡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로는 알취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상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잡가장비교체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 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판촉비용 분담	전국/지역단위 판촉	가맹계약기간	합의결정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 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필요판단시 해 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통보 → 일정합의 → 가맹본 부 담당자 방문 경영지도 → 경영지도 익일 가맹본부 담당 자가 경영지도결과 이메일 송 신 제공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익일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결과 이메일 송신 제공	가맹점 부담	문의: 운영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맛소우서울칼국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메뉴 레시피 교육 매장관리 실무 등	점주교육 점포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오픈시 필수교육
정기 교육	메뉴 레시피 교육 매장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서면 통지	
비정기 교육	신메뉴 레시피 교육 매장관리 실무 등	점포교육	교육실시 1주일 전에 서면 통지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맛소우서울칼국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점주교육 - 5일 점포교육 -개점전 1일 개업후 3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	1일	고지 후 정산	
비정기 교육	1일	고지 후 정산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3조에 따라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개점을 할 수 없으며, 기한내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_해당없음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_해당없음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_해당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 우에는 당사 운영팀(02-712-800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상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 공급상품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가맹점 관리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5] 대표메뉴 권장가격

순서	메뉴	가격(₩원/VAT포함)	비고
1	칼국수	5,500	
2	해물칼국수	6,000	
3	어묵칼국수	6,000	
4	들깨칼국수	6,000	
5	떡만두국(만두3알+떡)	5,500	
6	소불고기덮밥	6,500	
7	꼬막비빔칼국수	6,500	
8	육개장	6,300	
9	물막국수	5,500	
10	비빔막국수	5,500	
11	공기밥	1,000	
12			
13			

정보공개서 수령증

본인은 (주)삼원에프앤비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며, 수령한 정보공개서를 숙고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한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용도 외의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가맹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성 명	
기맹희망자 기맹희망자	생 년 월 일	
7 0 7 0 7 0 7 1	주 소	
	전화번호	
	상호 및 브랜드	주식회사 삼원에프앤비 사물기간국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135번길 129-19(성석동)
	사업자등록번호	866-87-01337

정보공개서 제공 일자 : 20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인) 또는 서명

가맹본부 : (주)삼원에프앤비 (인)

※ 정보공개서 수령증은 2부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각 1부씩 보관한다.